

2014. 3. 31. 의결, 2014. 7. 1. 시행

24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

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(형법 제357조 제1항), 배임증재(형법 제357조 제2항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배 임
수증재
범 죄

2014.
7. 1.
시 행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01 | 배임수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6월
2	3,000만 원 이상, 5,000만 원 미만	6월 - 1년	8월 - 1년6월	1년 - 2년6월
3	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	10월 - 2년	1년 - 2년6월	2년 - 3년6월
4	1억 원 이상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5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	-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- 적극적 요구 -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- 농아자 -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-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-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- 피해자(사무처리를 의뢰한 자)의 처벌불원	동종 누범
일반 양형 인자	행위	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	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-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-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
	행위자 /기타	- 진지한 반성 - 형사처벌 전력 없음	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

02^I 배임증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5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
2	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	4월 - 10월	6월 - 1년	10월 - 1년6월
3	1억 원 이상	6월 - 1년	10월 - 1년6월	1년 - 2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-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-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	- 적극적 증재 -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- 농아자 -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-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	동종 누범
일반 양형 인자	행위	소극 가담	-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-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
	행위자 /기타	- 진지한 반성 - 형사처벌 전력 없음	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

배 임
수증재
범 죄

2014.
7. 1.
시 행

[유형의 정의]

01¹ 배임수재

가. 제1유형

- 수재액이 3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제2유형

- 수재액이 3,000만 원 이상,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제3유형

- 수재액이 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라. 제4유형

-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

02¹ 배임증재

가. 제1유형

- 증재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제2유형

- 증재액이 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제3유형

-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



[양형인자의 정의]

01¹ 배임수재

가.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

-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
나. 피해자(사무처리를 의뢰한 자)의 처벌불원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
다.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

-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라. 적극적 요구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
 - －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
 - 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

- 직급에 관계없이,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바.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범죄로 인하여 학교, 언론사, 감정평가기관,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,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
 - 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2¹ 배임증재

가.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

- 위 ‘1.의 라’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－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,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
 - －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
 - 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적극적 증재

-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라.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

-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.

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01¹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02¹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03 | 동종경합범 처리방법

-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,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,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.
 - ②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
-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‘이종경합범 처리방법’의 예에 따른다.

04^I 이종경합범 처리방법

-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- 다만, 배임수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Ⅱ. 집행유예 기준

01¹ 배임수재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●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● 적극적 요구	●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●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● 피해자(사무처리를 의뢰한 자)의 처벌 불원 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, 내부비리 고발 등)
일반 참작 사유	● 동종 전과 ●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●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	● 장기간 성실한 근무 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● 피고인이 고령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

02¹ 배임증재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● 적극적 증재 ● 동종 전과(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	●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●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, 내부비리 고발 등)
일반 참작 사유	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●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	● 소극 가담 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

배 임
수증재
범 죄

2014.
7. 1.
시 행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－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－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에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